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. 5. 29 선고 2014가단6883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5. 15.

판결 선고 2015. 5. 2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임야 84,397m²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4. 12. 9. 접수 제157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1987. 6. 29. 소외 D과의 사이에 전북 고창군 C 임야 84,397m²(이하 '이 사건

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1987. 7. 11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. 8. 27. 채무자는 원고, 근저당권자는 E, 채권최고액 30,000,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, 그 이후 2004. 12. 7.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. 12. 9. 마쳐졌으며, 2004. 12. 16.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, 위 E로부터 20,000,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원고의 딸의 지인인 F을 통하여 알게 된, F의 매제인 피고와의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데, 명의신탁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을 20,000,000원에 매수하였고, 원고는 위 돈으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등기를 말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.

3. 판단

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,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,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·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4다10160 판결,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5다18542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, 피고가 그와 같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추정되고, 갑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, 갑제4 내지 10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등기된 원인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,000,000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,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을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가지고 재산세를

납부해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).

4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이금진